

<바른교회>

바른 재정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세미나는 <바른교회아카데미>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빛누리> 등 한국교회의 개혁과 갠신을 위해 노력하는 4개 단체가 연합하여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여러모로 질타를 받고 있는 요즈음, 이 자리를 통해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투명성은 귀찮고, 성가신 것이 아니라 편리함과 온전함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익숙해지면 걸어서는 갈 수 없는 먼 곳까지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거침이 없는 자유를 말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깨끗한 절차와 신뢰성 있는 과정을 체화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에 흔쾌히 동참해주시고,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교회아카데미 드림

주요 프로그램

10:00-10:10 등록

10:10-10:20 환영인사 김동호 목사 (높은뜻송의교회, 바른교회아카데미 원장)

10:20-11:00 주제강연 – 정주채 목사 (향상교회, 바른교회아카데미 이사장)

11:00-12:00 사례발표 – '한국교회의 재정 투명성, 현실과 과제'

방인성 목사 (성터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뉴스앤조이 발행인)

김남호 대표 (㈜ELBIN 대표, 높은뜻송의교회 장로)

신동식 목사 (빛과소금교회, 기윤실 건강교회운동 분과 대표)

황병구 본부장 ((재) 한빛누리)

12:00-13:00 점심식사 1층 카페

13:00-14:30 실무 강좌(1) '사례 분석, 한국교회 재정관리 현실'

14:30-17:00 실무 강좌(2) '재정 정관이 필요하다'

최호윤 회계사 (제일회계법인 이사, 개혁연대 및 기윤실 집행위원)

한국교회 재정운용 실태조사 결과

발제자: 방인성 집행위원장(교회개혁실천연대)

개혁연대는 지난 8월, 한국교회의 재정문제에 관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조사는 한국 교회의 재정운용 상황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가를 확인하고 향후 바람직한 운용 방향을 제안하여, 개교회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한국교회 재정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의 주장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호윤 회계사가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조사개요

교회재정 분석 작업을 위하여 공식 · 비공식적으로 많은 교회에 결산서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폐쇄적인 내부정책으로 인하여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6개 교회 결산서와 23명의 재정담당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입수할 수 있었다.

교회별 규모 · 지역 · 교단 분포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한 선정기준에 의한 표본추출이 아니므로 제시된 46개의 교회의 결산서가 모집단인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으나, 한국교회 재정결산서 분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46개 교회의 자료라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추출된 표본이 된 교회들은 교회 재정보고서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개혁성향의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를 제한적으로 한국교회에 투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교회들의 재정운용상황을 정리 · 분석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A. 재정담당자의 재정운용 인식도 분석

무기명으로 재정관련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23명의 실무자가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다른 담당자가 동일한 교회에 출석할 수는 없으므로 23개 교회의 설문조사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14명의 담당자는 재정자료를 같이 제시하였으며, 9명의 담당자는 재정자료 공개 없이 설문조사에만 응하였다.

설문지(별첨, 21p)에서 파악하고자 의도한 내용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가) 재정관련 규정의 유무

23개 교회 중 17개 교회(74%)에서 정관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14개 교회의 정관에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1개 교회는 정관 없이 재정에 관한 규정만 있다고 답하였다.

회계처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6개교회만 정관규정에 따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관에 있는 재정에 관한 규정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예산 설정 및 통제

18개 교회(78%)에서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8개 교회만 예산 설정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교회는 예산제도가 없거나 예산 설정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이 없거나 예산 설정 지침이 없다는 사실은 교회가 재정을 무엇을 위하여 집행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전년도 결산 내역에 준하여 집행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상황에 따라 특정인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할 장치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예산위원회 인원은 3명~23명까지이나 5명(2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원장의 직분은 주로 장로(65%)였다.

예산에 없는 항목을 지출하거나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65%), 예산초과지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승인 받거나(30%) 당회 승인 후 지출하는 경우(26%)가 일반적이었다.

건축현금 등 목적현금을 은행계좌를 구분(39%) 또는 구분 없이 사용(26%) 하더라도 사용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개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후 보충하고 1개 교회는 현금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다.

다) 업무의 분장

20개(87%)의 교회가 집행자와 승인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13개(56%) 교회만 집행자와 기록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교회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류 또는 부정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구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 재정 담당자들의 자질 및 교육

7개 교회의 재정담당자(30%)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재정담당자의 평균 재임기간은 2~3년(65%)이며, 10년인 교회(1개)도 있었다.

2개 교회(8%)만 담당자를 위한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며, 담당자들은 주로 인수인계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파악(56%)하나, 회계처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신임 담당자가 인수인계만으로 담당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8개 교회(78%)가 업무인수인계처리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자의 상식에 의한 인수인계 이므로 후임자가 그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 개별 재정운용 사안

- 회계처리기준

15개 교회(65%)가 정관에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6개 교회(26%)만 정관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정관규정이 형식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개 교회(13%)는 교회와 무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8개 교회(34%)는 상식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는 현상은 교회회계기준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복식부기 채용

5개 교회(21%)가 복식부기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아직 그 비중이 낮으며, 4개 교회만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한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교회들은 장부가 아닌 메모형식으로 자산・부채를 관리한다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회계처리 도구

9개 교회(39%)가 교회관리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4개 교회만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부채명세를 장부에서 산출하므로 4개의 교회는 복식부기용 프로그램, 5개 교회는 단식부기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교회는 엑셀 또는 워드를 사용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결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보고서의 종류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지결산서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으며(82%), 1개 교회만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고 답하였다.

- 결산서 작성주기

매월 작성하는 교회가 10개 교회이었고 분기별은 5개 교회, 년간은 4개 교회가 작성하고 있다.

비) 감사 및 조정 기능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감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이기보다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구성되며 평균 1년에 1번(47%) 감사를 시행하나 매월 감사를 시행하는 교회도 있었다.

감사결과는 담임목사 또는 당회에 보고되어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있으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다고 답한 교회가 7개 교회라는 사실은 감사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재정관리에 관한 관심도

21개 교회 담당자들은 교회재정을 교인들에게 완전 공개 또는 대부분을 보고하도록 생각하는 반면에, 15개 교회만 일반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답변자 중 17개 교회(73%) 담당자들이 한국교회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담당자나 교인 모두가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책임감이 없다.
- |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재산취득 및 운영유지비로 사용하고, 이웃을 돋거나 선교에 사용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
- | 당회장 또는 소수에 의하여 재정운용이 전횡되고 있다.

또한 답변자들은 예산 편성 및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 | 운영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편성은 이웃구제, 선교 및 장학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14인).
- | 교회의 장기적인 목표와 예산의 연계가 필요하다.

아) 기타

- 목회자의 재정에 관한 관여도
17개 교회(73%)가 전혀 관여 않거나, 아주 깊이 관여하는 양극화 현상이다.

- 소득세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B. 결산자료분석

수집된 결산서의 규모별 통계치를 정리하여 규모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비중 차이를 분석, 규모의 차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화 여부, 수입 및 지출항목의 특성, 계정과목 사용의 적정성 및 보고서 형태의 유용성을 파악하였다.

1. 표본추출

결산서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공지, 개별접촉 등의 방법으로 결산서 제시를 요청한 결과 제시되는 결산서 모두를 표본으로 선정하되 2개년도가 중복된 교회의 결산서, 결산자료 중 일부가 누락된 교회의 결산서, 단순한 예산만 기록한 결산서,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2개 교회의 결산서를 제외한 28개 교회의 결산서를 표본으로 하였다.

<표> 그룹별 수입규모

연간 수입금액 규모	교회수	비율(%)	수입금액	비율(%)
그룹1: 1억 미만	3	10.71	135,735,603	0.29
그룹2: 1억 이상 - 2억 미만	4	14.29	561,773,813	1.21
그룹3: 2억 이상 - 5억 미만	8	28.57	2,937,088,731	6.33
그룹4: 5억 이상 - 10억 미만	5	17.86	3,590,078,732	7.74
그룹5: 10억 이상	8	28.57	39,168,493,031	84.43
합 계	28			

2. 수입분석

수입계정 처리는 전체적으로 교회마다 유사하였으며 항목별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항목별 수입계정 내역

구 분	비율(%)
감사헌금	9.34
십일조헌금	56.58
절기헌금	5.77
구제헌금	0.19
선교헌금	1.16
건축헌금	5.42

기타목적현금	0.57
일반현금	9.54
기타현금	1.21
수익사업수입	0.48
자산·부채의 변동	8.41
기타수입	1.33

가) 십일조

교회규모와는 상관없이 수입금액의 가장 큰 비율(56.58%)을 십일조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황호찬/최현돌 교수가 조사하였던 1996년의 자료(53.3%)와 큰 차이가 없다.

나) 목적현금-대외

선교 또는 구제로 사용목적을 정한 현금 비율은 각각 1.16%와 0.19%에 불과한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교 또는 구제 목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내부 재산 형성

대외사용이 2.35%에 불과한 반면 내부 건축목적현금 및 이에 따른 자본 변동으로 인한 수입이 13.83%에 달하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단계를 지나 중간규모의 교회에서 건축현금 비중이 높으며, 소규모 교회보다는 대규모 교회에서 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입 발생액의 금액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라) 절기현금

절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슷한 형태를 나타냈으며, 중간 그룹부터는 항목을 통합 또는 분리 표시하는 차이로 비율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류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신년예배	202,909,700	0.4	0	0	4,349,000	0.8	14,056,200	0.5	24,447,700	0.7	160,056,800	0.4
부활절현금	374,295,485	0.8	615,000	0.5	8,060,500	1.4	43,062,450	1.5	30,926,720	0.9	291,630,815	0.7
액추감사절	101,715,000	0.2	480,000	0.4	7,675,000	1.4	30,980,000	1.1	13,971,000	0.4	48,609,000	0.1
추수감사절	785,609,849	1.7	593,000	0.4	14,338,000	2.6	78,901,260	2.7	59,755,290	1.7	632,022,299	1.6
성탄절	332,019,626	0.7	691,000	0.5	5,804,000	1	35,885,670	1.2	28,540,900	0.8	261,098,056	0.7
절기현금	880,475,360	1.9	0	0	16,485,010	2.9	10,962,950	0.4	0	0	853,027,400	2.2

마) 일반현금

주일현금, 주정현금, 월정현금 등 경상성격의 현금은 교회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10% 내외의 비율을 보였다.

마) 수익사업수입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교회 건물을 교인을 포함한 외부인에 임대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수취하는 교회가 있었다.

3. 지출분석

교회 연간 수입금액 규모별로 지출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교회 규모에 따른 항목별 지출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규모별 지출금액 내역

지출항목 대분류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사례비	16.91	40.14	29.52	25.12	25.16	15.29
예배, 목회비	3.37	2.96	4.95	4.43	5.98	3.05
관리비	5.25	5.79	7.56	2.22	5.78	5.37
사무관리행정비	22.28	15.42	21.67	26.2	23.89	21.92
전도비	0.78	0.68	1.31	1	1.92	0.67
친교비	0.4	3.28	1.99	0.58	1.35	0.26
행사비	1.42	0.65	1.94	1.77	3.21	1.24
교육비	5.92	2.9	5.8	9.73	9.04	5.41
구제비	3.11	0.23	1.98	3.55	3.67	3.07
선교비	10.67	5.89	4.06	8.46	5.79	11.38
외부지원	0.99	5.3	2.78	3.8	3.93	0.49
자산취득, 적립	10.23	7.89	10.81	5.57	7.59	10.76
부채상환금	11.42	8.88	0.39	0.21	1.3	13.27
금융비용	2.51	0	4.98	0	1.23	2.75
기타지출	2.98	0	0	7.03	0.01	3.02
예비비-지출	1.78	0	0.25	0.34	0.17	2.05

전체적으로 교회 재정은 사무관리비, 사례비, 재산 적립 또는 부채상환(금융비용 포함)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이는 내부의 유지와 확장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 목회자 사례비

미자립 교회 또는 규모가 작은 경우 지출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수입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낮아진다.

나) 관리 및 사무행정비

교회 규모와는 상관없이, 행정비 성격인 내부 사무 및 관리비용이 가장 큰 비중(27.53%)을 차지하고 있다.

다) 교육비

중간 규모의 교회에서 투입하는 교회학교 및 교인들을 위한 교육비 비중(5.8%~9.04%)이 소형(2.9%) 또는 대형교회(5.41%)의 비중보다 높다.

라) 구제・선교비

선교현금, 구제현금 비율에 비하면 지출 비율이 높으나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교회의 관심으로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마) 특별 재산관리비의 증가

교회규모가 확대될수록 교회 재산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차입하였던 부채상환 비중이 높아져간다는 것은 교회규모가 클수록 내부관리비용의 요구가 높아지고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자기관리비용이 증가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바) 기타지출 • 예비비지출

대형화가 되어갈수록 지출규모도 커져가지만 예비비 사용비율이 높다.

예산 작성 시 필요한 예산을 유보시켜두는 개념의 예비비 계정을 지출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정사용 내역을 별도 승인을 받거나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보여준 결산서는 전혀 없었다.

4. 재산관리와 복식부기

수지결산서로는 적극적인 재산(자산)과 소극적인 재산(부채)의 실재성과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2개 교회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으며, 4개 교회가 수지결산서에 재산 및 부채 현황표를 첨부하였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결산서만 작성하였으며, 재정담당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모 형식의 비망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비망기록은 변동내역관리 등 기록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교회들이 재산관리에 취약하다.

5. 회계처리의 문제점

교회의 수지결산서를 정리하면서 파악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정형화된 분류기준 또는 보고형식이 없다

28개의 교회 결산서 중 수입금액 분류는 비슷하나 형식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교회는 한 곳도 없었다. 즉, 교회 결산서의 형식은 재정 담당자의 능력, 교회의 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가되거나 삭제되었기에 정형화된 보고서의 체계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회들 간의 재정사용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수직적 또는 수평적 비교가능성은 회계정보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유용한 속성 중의 하나이나 교회별로 다른 형식의 결산서를 만들었기에 타 교회의 결산서와 비교, 참고하여 교회의 재정관리를 개선하거나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든 교회가 수지결산서만 작성하고 있으나, 수지결산서의 근본적인 한계인 활용 가능한 교회내부의 자원 활용결과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나) 계정과목의 다양성

결산서는 재정의 수입과 운용에 대한 결과를 숫자로 표현한 또 다른 형태의 언어이므로 결산서를 보는 사람은 결산서를 작성한 사람이 표현하고자 한 재정운용 내역과 동일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결산서는 재정운용 내역을 작성하는 사람과 이를 보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므로 그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정보전달에 있어서의 혼선을 야기하는 위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정과목을 사용할 때에는 계정과목의 명칭만으로도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계정을 신설할 때에는 의미전달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회재정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의미하는 내용은 사용자의 성격에 따라 교회마다 다르다. 즉, 동일한 재정 집행내역이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일식당 운영비를 '예배비', '전도비', '후생비', '교제비' 등으로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재정보고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서로 다른 계정과목으로 표현된 항목을 보고 이를 주일 식당운영비로 동일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 계정과목 체계의 복잡성 및 단순성

계정과목을 개별교회의 필요에 따라 신설하거나 통합하였기에 때로는 아주 세분화 시켜 지출내역을 나열하는 형태(예: 사례비를 목회자 개인별로 계정과목화하여 기록)로 계정을 사용하거나, 부서를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나열하는 형태의 계정과목 사용은 보고서의 분량이 방대해지므로 보고용 결산서라고 하기보다는 계정별 내역을 표현하는 장부이며, 부서의 지출액 합계를 통합계정과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계정운용내역을 표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라) 모호한 계정과목의 사용

계정과목만으로 재정사용내역을 정리할 수가 없으면 결산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히 계정과목으로 '행사비' 또는 '수련회 진행비'로 표현된 경우 이를 보는 사람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출된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항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미래 유사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예측 가능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러한 포괄적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항목을 정리한 부속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정보를 첨부한 결산서는 없었다.

마) 정액 비용으로 결산

교회재정결산서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정액 지급액이 많은 점이다. 정액지급액은 실제 발생액을 정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며, 이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하는 청지기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인건비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였기에 상관이 없으나 그 이외의 항목은 활동과정에서 발생·지출하는 실비변상의 성격이므로 정액을 지급한 후 지출액이 만원단위 또는 천원단위로 결산할 것이 아니라 사용액을 정산하여 남으면 재정에 환입시키고, 모자라는 금액은 추가 정산하여 지급된 금액을 실제 발생액 기준으로 일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정액지출액이 많다는 현상은 재정집행내역을 정확히 계산하여 관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재정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특정 범위 내에서 집행자(담임 교역자 또는 재정관리자)가 알아서 잘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재정을 관리하는 현상이다.

이는 특정인의 신앙적 양심에 의존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언제든지 재정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용 지급이 실비변상 성격인가 아니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가의 구분은 다음의 항목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특정인에게 급여성격으로 귀속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a) 비용집행으로 인한 결과가 특정인에게 전속되거나,
- b) 실제 사용과는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바) 예비비 계정의 사용

교회가 결산계정과목의 지출항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점은 예비비의 개념을 혼돈되고 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통제 개념을 중요시하는 정부회계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예산 계획 시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대한 예산 추정액을 미리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예산 수립 시 지출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예산 집행 시 예비비를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예산회계법 21조, 39조, 40조 참조).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예비비의 개념을 예산 수립 시에는 사용할 수는 있으나 결산 처리 시에는 그 사용내역을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예비비 사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결산승인 시 별도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사) 자산관리기능의 부재(단식부기의 한계)

모든 교회가 수입, 지출 항목을 집계한 수지결산서 개념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나, 수지결산서의 가장 큰 단점은 교회의 적극적 재산(자산)과 소극적 재산(부채)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자산의 취득 또는 적립을 모두 지출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로는 현재의 취득한 재산관리 또는 적립한 재원을 정확히 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

일부 교회가 수지 결산서와 별도로 재산항목을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는 복식부기에 근거하지 않은 회계처리로는 재산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6. 총평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재정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첫째는 교회의 재정 관리는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덮어주는 관점은 교회에 맡겨진 하늘나라 재원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한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둘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재정관리가 운용되어 간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하여야 하나, 일반 사회보다 물질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거나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교회재정문제를 덮어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면위로 내어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바른 길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는 이러한 연구가 한국교회 재정현황을 바로 분석하고 바른 대안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추가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높은뜻 숭의교회 재정관리 예시

발제자: 김남호 대표 (㈜ELBIN 대표)

높은뜻
숭의교회
GOD'S WILL
SUNGWI CHURCH
ALO
ATO

높은뜻 숭의교회 재정관리 예시

2006년 12월 1일

바른 재정 세미나

높은뜻
숭의교회
GOD'S WILL
SUNGWI CHURCH
ALO
ATO

Mission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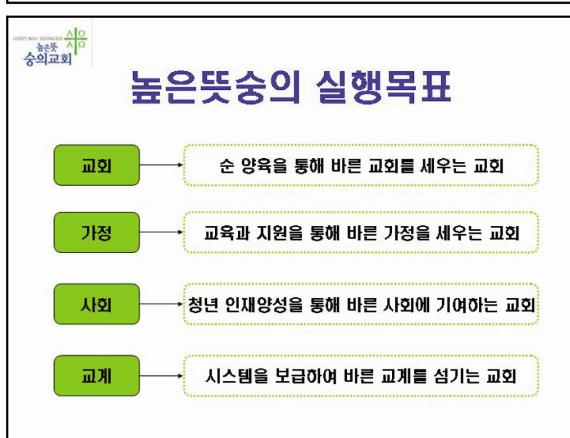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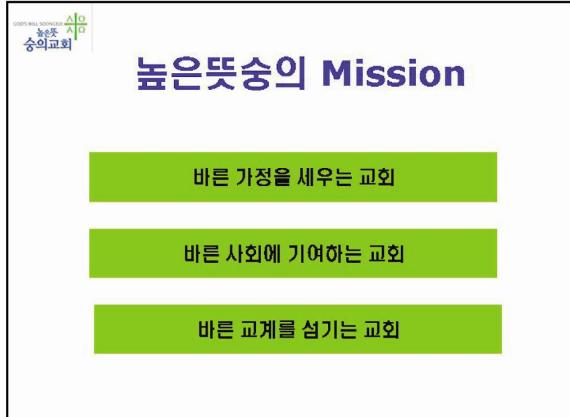
높은뜻 브랜드 :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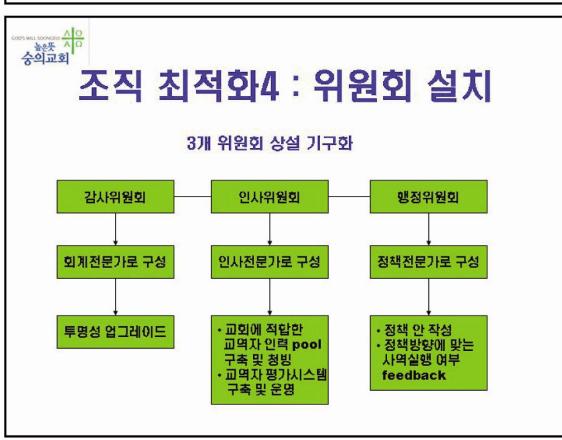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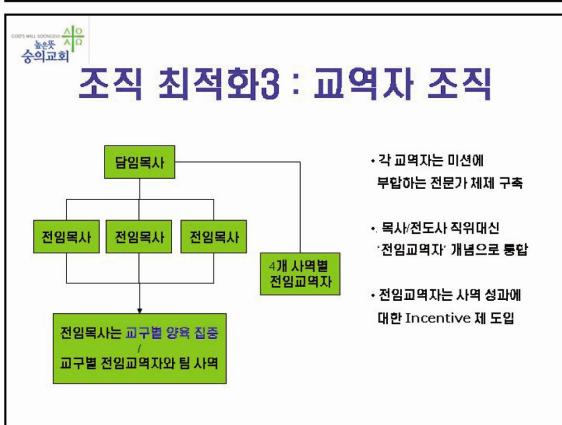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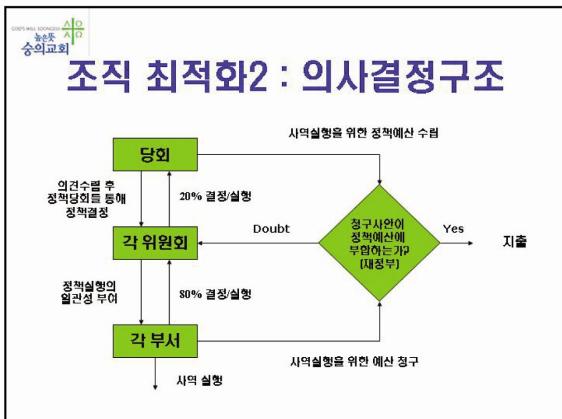
```
graph TD; A[하늘의 뜻] --> B[What]; C[땅] --> D[Where]; E[이루는] --> F[How]; G[교회] --> H[Wh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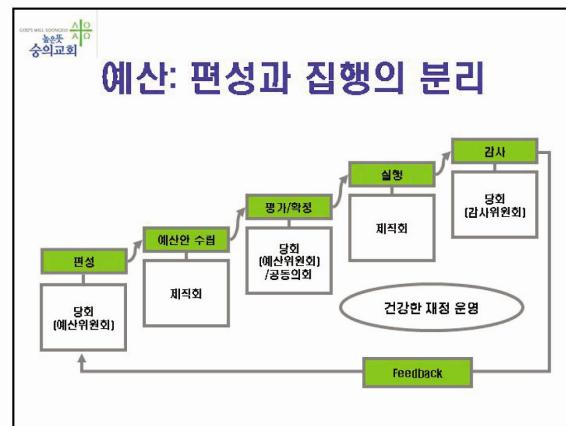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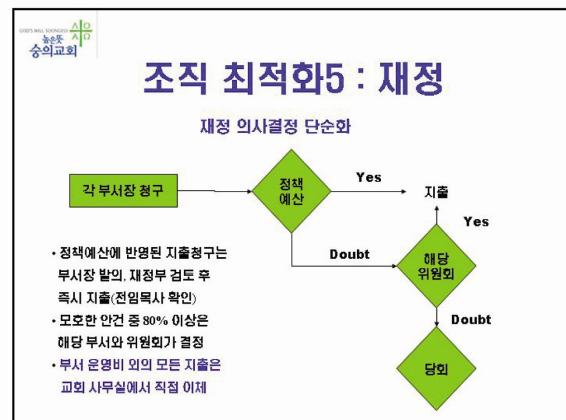
높은뜻
숭의교회
GOD'S WILL
SUNGWI CHURCH
ALO
ATO

하늘의 뜻은 “바름”이다

- 창립 당시부터 교회의 건강함과 바름을 목회 철학으로 설정했고, 교인과 교계에 분명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
- 한국 교계와 사회의 시대적인 필요와 함께 우리 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미션
- 교회의 바름은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와 사회에 양후 7년간 핵심적인 이슈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정직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 세우기

신동식 목사(빛과소금 교회)

1. 들려오는 소리들

2. 정직한 교회 세우기 [제정에 관련된 사항]

- 1) 정관 제정
- 2) 재정 원칙 - 4. 3 .3
- 3) 목회자 세금 납부

3. 정직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

- 1) 정직한 보고
- 2) 모든 구성원의 신뢰
- 3) 재정 사항에 대한 투명성 및 확인 가능성

4. 나눔과 셈을 통한 재정관리

- 1) 사용이 편리
- 2) 재정의 전반적 평가가 매우 유익
- 3) 실수와 오기가 적음
- 4) 지출[영수증] 관리가 수월하고 깨끗함
- 5) 예결산 진행이 수월해짐
- 6) 성도들의 신뢰성이 확보됨
- 7) 재정보고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보고되고 쉽게 이해됨
- 8) 세금 결산 및 보고가 쉬워짐

5. 나가는 말

투명한 재정집행의 객관적 요건

황병구 본부장 ((재)한빛누리)

Standards for Charitable Accountability (기부 재정 투명성 표준 현황)

INDEPENDENT GROUPS (독립연구소, 기관, 위원회가 제시한 표준들)

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s - Standards for Charitable Solicitations

National Charities Information Bureau - Standards in Philanthropy

Charities Review Council of Minnesota - Standards

NONPROFIT GROUPS (비영리단체 또는 그 연합들이 스스로 마련한 기준들)

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 7 standards of responsible stewardship

Maryland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 Standards for Excellence

Minnesota Council of Nonprofits -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nonprofit excellence

InterAction -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PVO) standards

OTHER GROUPS (그 밖의 연대체들이 요구하는 가입단체 요건들)

United Way of Orange County (California) - Eligibility requirements

United Way of Portage County (Ohio) - Agency Admission Standards

National Society of Fund Raising Executives

- Statements of Ethical Principle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Practice

International Committee on Fundraising Organizations - International standards

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복음주의 재정투명성 위원회)

7 Standards of Responsible Stewardship (책임있는 청지기로서의 7대 표준)

Standard 1. Doctrinal Statement

(정관상 성경적 정체성과 청지기적 재정집행에 대한 명문화 여부)

Standard 2.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Review Committee

(다수의 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Standard 3.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외부 감사를 거치고 회계표준에 맞춘 재정보고 작성 여부)

Standard 4. Use of Resources

(목적에 맞는 재정 사용을 위한 통제장치 여부)

Standard 5. Financial Disclosure

(공식 요청시 재정 보고서의 공개 여부)



Standard 6. Conflicts of Interest

(이해 당사자의 배제 장치, 공정한 복수견적 원칙 등의 적시 여부)

Standard 7. Fund Raising

(모금에 대한 세부 실행 기준 적용 여부)

7.1 Truthfulness in Communication

7.2 Communication and Donor Expectations

7.3 Communication and Donor Intent

7.4 Projects Unrelated to a Ministry's Primary Purpose

7.5 Incentives and Premiums

7.6 Reporting

7.7 Percentage Compensation for Fund Raisers

7.8 Tax Deductible Gifts for a Named Recipient's Personal Benefit

7.9 Conflict of Interest on Royalties

7.10 Acknowledgement of Gifts in Kind

7.11 Acting in the Interest of the Donor

7.12 Financial Advice

기독운동지원기금사업 협력단체 심사자료1 - 단체 전반

개요	단체명			대표자
	설립일			
조직	조직형태	법인()	민간단체()	
	조직구성	임의단체()	기타()	
	회원수			
단체 소개	단체 소개			
	설립 목적			
	전략 (사업추진방식)			
주요 사업	2005년			

	2006년	
주요 연혁	날짜	내용

기독운동지원기금사업 협력단체 심사자료2 - 재정 현황

전년도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총액			
	후원 수입	정기		
		비정기		
	수익 사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당해년도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총액			

	후원 수입	정기 비정기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기타 지출	
당해연도 초 또는 신청일 현재	자산			부채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현금			개인	
	동산			금융권	
	부동산			미지급금	
	기타			기타	

기독운동지원기금사업 협력단체 심사자료3 - 회계 시스템 현황

회계 시스템	금전출납부	()
	엑셀	()
	단식부기 회계 패키지	()
	복식부기 회계 패키지	()
담당자	전공(고교, 대학)	
	회계실무경력	
	회계교육과정	
정기 감사	정기 감사 여부	
	감사의 형식 (횟수, 누구에게)	

'사례 분석, 한국교회 재정관리 현실'

'재정 정관이 필요하다'

최호윤 회계사 (제일회계법인 이사)

| 사례 검토 |

- | 개척 초기에 담임목사의 사재(담임목사가 차입한 차입금 포함)를 털어서 교회를 운영하느라 개인 재산과 교회재산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교회 형편이 좋아지니 이전에 털어 넣었던 사재를 인출한다고 계속 교회재정에서 회수해 가는 것으로 인해 교인들이 시험에 든다.
- | 교인들은 늘어나고 장소는 비좁고 교회를 신축하려니 신축할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은행 차입을 활용하여 신축하여야 하나?
- | 선교와 구제에 50%이상의 지출을 계획하였으나 규모가 작아서 인건비와 교회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크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인가?
- | 부서별 예산이 남는 경우 연말에 이를 다 소진하려고 필요이상의 지출을 많이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 | 교인들이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을 싫어해서 수지결산서만으로도 재정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 | 교회 내부에 감사 직분이 있으나 서로 친밀한 사람들 간에 얼굴 붉히는 것을 싫어해서 재정에 관한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 | 복식부기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배우기는 어렵고 규모도 작은데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



교회 재정 투명성 이렇게 실천하라!

1. 재정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

가) 재정관리를 안하고 하루하루 행한다면?

- ① 믿음과 의뢰함의 확신?

<-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책임 유기

나) 재정관리의 긍정적 필요성

- 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
- ②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드려진 현금을 사용하신다
- ③ 한정된 자원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장 효과 있는 사업에 집중하여야 한다.
- ④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에는 재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⑤ 지역교회의 재정자립의 필요성: 지역사회에 부담이 되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살전 4:11~12)]
- ⑥ 교회의 재정관리 형태는 교인들의 재정관리의 모델이 된다.
- ⑦ 재정결산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일년 동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사업의 결과로서 우리가 감사(感謝)할 제목들의 나열이다.

다) 재정관리 안 하는 경우의 부정적 요소

- ①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정말 중요한 사역을 행하지 못하는 실수 발생
- ② 재정 수입이 넘치는 경우 균형있게 사용하기보다는 낭비하기가 쉽다
- ③ 의사결정 과정의 전유화로 특정인의 사유물화 되는 경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교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된다.
- ④ 부지불식간에 영리기업의 경영논리 또는 자본주의논리에 교회가 동화되기가 쉽다.
 - a 성과주의에 집착
 - b 차입금의 활용
- ⑤ 불미스러운 경리사고 또는 재산을 둘러싼 교회 분쟁상태 야기.
- ⑥ 개인재산과 교회공동체재산의 혼동. (개척교회인 경우 많이 발생하며 이것이 분쟁의 씨앗이 됨)

라) 규모의 경제: 재정관리는 큰 교회만 한다?

- ① 맡겨진 달란트 양의 차이에 불구하고 주어진 달란트를 충성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 ② 효율성: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관리를 잘해야 문제발생을 줄일 수 있다
- ③ 청지기 자세

마) 수지결산서와 단식부기로 충분한가?

- ① 편리성에 따른 한계점
 - a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 b 현금/(요구불)예금을 통합관리하므로 현금 및 예금계좌별 개별관리를 할 수가 없다. <-자금유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
- c 현금/(요구불)예금 이외 보유하는 재산 또는 부채의 증감을 관리하지 못한다. <-적립금 등에 대한 재정사고 발생 가능성
- d 당해 년도 수입/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다.
 - i 재산리스트가 없으므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ii 보유 자산의 감모분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자산 교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이를 대비하는 준비를 할 수가 없다.
- e 자금수지 등 비경상적인 수입/지출액이 포함되므로 자금흐름의 정보를 왜곡시킨다.
- f 담당자의 자의적인 자금 운용 또는 자금 유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사고발생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 수지결산서는 당해 년도의 수입/지출만 관리함으로 인하여 미래의 수입/지출이 될 자산, 부채를 관리하지 않는 근본적 한계성이 있다.

② 복식부기 특징

- a 자금 변동에 따른 상대항목(원인/결과)를 동시에 관리
- b 자기 오류 검증기능
- c 자산 및 부채의 입체적 관리
- d 수입/지출 뿐만 아니라 활동(Activity)에 대한 평가도 가능

③ 복식부기 도입의 애로사항

- a 담당자의 자질 부족과 어려움
- b 세상일과 하나님 나라 사업에 대한 차이
 - i 기업회계는 주주의 재산을 관리
 - ii 교회재정관리는 하나님나라 재산을 관리
- c 교회와 담당자, 성도 모두 배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

바) 믿음에만 근거한 관리와 제도로도 뒷받침하는 운영

- ① 믿음만 강조하여 담당자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그들에게 잔인하고 가혹한 처사이다.
- ② 제도에만 의지할 것은 아니며, 믿음과 제도는 병행되어야 한다.

사) 재정에 관한 관점

- ① 하나님과 재물(Money, Mammon)을 겸하여 섭기지 못하느니라(6:24): 재물이 하나님과 유사한 위치에서 섭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임. <= 교회도 재물에 사로잡힐 수 있다.

2. 재정관리의 논점

- 가) 주체: 누가 교회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가?
- 나) 현금: 어떤 현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 다) 예산: 어느 사업에 집중할 것인가?
- 라) 운용: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할 것인가?
- 마) 정리: 어떻게 정리하여 보고할 것인가?

3. 재정운용/관리의 기준의 적용 순서

- 가) 성경
- 나) 교단 헌법
- 다) 개별 교회의 정관/규약
- 라) 장, 단기 교회의 목회계획
- 마) 세부 규칙:
- 바) 일반 관례

4. 재정운용의 절차

- 가) (정관/규약)
- 나) 장단기 목회계획의 수립
- 다) 예산수립
 - ① 예산 지침서: 목회방향에 따른 예산 배분 원칙, 예산 전용의 범위 등 예산 수립의 기본이 되는 지침서이다.
 - ② 부서(사업)별 예산 초안 작성 및 통합
 - ③ 예산안 심의
 - ④ 예산안 승인
- 라) 집행
- 마) 정리 및 결산
- 바) 감사 보고
- 사) 결산 승인

5. 재정관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 가) 전체 교인: 재정관리를 교회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관심을 가지고 예산 설정과 집행이 바르게 진행되도록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기도로 조력할 의무가 있다.
- 나) 실무담당부서: 교인을 대표하여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대리인(Agency)로서 청지기적 관점으로 담당하여야 한다.

6. 예산 설정

가) 의의 및 필요성

- ① 목표의 명확화: 방향성과 활동목표
- ② 한정된 자원의 배분
- ③ 계획에 의한 운영
- ④ 자의적인 집행을 통제

나) 예산 편성의 원칙

- ① 사전결의: 예산은 집행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단, 전기대비 동일한 수준의 경상지출 성격의 준예산 집행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 ② 합의성: 예산은 목회활동에 따라 전체 교인들이 1년간 혼신방향에 대한 약속이므로 공동체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 ③ 공개: 설정된 예산은 교회 구성원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야 한다.

④ 명료성:

⑤ 제로(Zero)기준 예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년도 수입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지출하는 제로기준 예산을 작성한다.

다) 예산의 종류

- ① 일반예산/특별예산: 일반 회계에 관한 예산인지 특별목적의 기금관리 예산인지에 따른 분류
- ② 확정예산/수정예산: 처음 승인을 받은 예산인지 사정변경으로 수정한 예산인지
- ③ 준예산: 회기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하여 경상적인 지출을 전년도 지출에 준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한시적이다.

라) 예산의 전용 및 이월

마) 예산 편성 비율기준

- ① 2분론: 인건비와 교육비 / 선교비와 행정비
 - ② 3분론
 - a 인건비 / 행정비 / 교육, 선교
 - b 인건비와 행정비 / 교육비 / 선교, 구제비
 - ③ 4분론
 - a 인건비 / 행정비 / 교육비 / 선교, 구제비
 - ④ 5분론, 6분론: 규모에 따라
- 바) 예산분류의 체계(계정과목의 체계)**
- ① 기능별 분류: 예배비/교육비/행정비 등
 - ② 목적별 분류: 인건비.통신비/인쇄비 등
 - ③ 조직/기관별 분류: 예배부/봉사부/성가부 등
_____ 목적별과 기관별 또는 기능별 체계의 혼합이 필요함

7 . 집행

- 가)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 ① 재정적 한계 엄수
 - ② 신축성의 유지
- 나) 월간 예산 통제
- 다) 과부족 원인 발생 시 추가 경정 필요
- 라) 집행방법: 자동/요청/협의
- 마) 집행 시 범하기 쉬운 오류
- ① 규정에 의한 원칙 무시
 - ② 불법적 요소

8 . 세금과공과

- 가) 세금의 성격: 이웃사랑의 최소한의 실천
- 나) 교회와 세금: 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혜택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과는 별개로 세법상의 협조의무 이행 필요 -> 사회의 바른 납세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교
회가 선도적 역할
- 다) 필요한 협조의무
- ①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제출 + (신용카드 사용)

- ② 소득 지급시 원천세 징수 및 신고, 납부 의무
- ③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④ 출연재산 보고의무

9. 기록 체계

- 가) 단일 회계: 모든 회계처리를 한 곳에 모아서 처리
- 나) 기금별 회계: 특정 목적별로 기금을 설정하는 경우 목적별로 구분 회계처리
 - ① 목적이외의 전용 금지: 하나님 나라와 먹고 사는 문제의 갈등
 - ② 목적적합한 회계처리
 - ③ 구분회계처리후 통합(결합)결산서 작성 필요

10. 기록방법

- 가) 단식부기
 - ① 재산(현금 및 예금)의 증감만 기록
 - ② 이해가 쉽다
 - ③ 증감의 원인 추적이 어렵다
 - ④ 전체적 관리기능 부재
- 나) 복식부기
 - ① 복수계정의 증감을 기록
 - ② 자동오류검증기능
 - ③ 재산/부채의 총체적, 입체적 관리
 - ④ 조금의 노력이 필요

11. 감사

- 가) 감사의 종류
 - ① 업무감사/회계감사
 - ② 내부감사/외부감사
- 나) 감사시기
 - ① 회계연도중: 업무감사
 - ② 결산기 이후: 회계감사
- 다) 감사의 기능
 - ① 위임 받은 청지기 책임을 다하였는지?
 - ② 제도적 미비점 발견하여 개선
- 라)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개선
 - ① 기존: 부정을 적발하는 개념으로 인식
 - ② 개선
 - a 재정운용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업이므로 이를 검토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손길들을 정리하는 업무이다
 - b 청지기로서 부족하였던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서 개선해가려는 노력이다
 - c 결산과 감사(監査)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感謝)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1 2 . 결산보고 및 승인

가) 결산서의 의미: 1년간의 활동을 숫자라는 언어로 표현한 보고서이며, 결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사업의 결과를 보여준다.

나) 1년간 활동에 대한 평가

- ① 주력활동과 미진한 부문 분석
- ② 계획과의 차이 발생원인 파악
- ③ 차년도 계획에 수정 반영

다) 결산서 공시

- ① 교회의 재정 운용은 공동체 합의에 의한 결과물이어야 하므로 교회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재정운용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운용이 아니라 특정인의 결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이기 때문인 것이 대부분이다. 단, 선교/구제사업 수혜자의 개인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재정위원회 내에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 ③ 교회의 재정 운용원칙 및 결과물이 교인 개인별 재정관리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3 . 바람직한 재정관리체계

- 가) 재정원칙의 정립
- 나) 예산수립 및 예산에 근거한 집행
- 다) 복식부기 체계의 도입
- 라) 목적 적합한 결산서 계정과목 설정
- 마) 기능의 분리
- 바) 문서화
- 사) 실질적인 감사의 기능
- 아) 결산서 공시의 기능

재정에 관한 규정(정관 및 규칙)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이 제사장에 의해 임의로 처분되었고, 따라서 봉헌자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만족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제가 없어진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현금이 목회자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현금을 관리하고 사용할 선한 청지기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전환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 또는 기준이 필요하다.

아래에 제시되는 정관 및 규칙은 바른교회아카데미, 교회개혁실천연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재)한빛누리가 공동으로 구성한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에서 교회재정운용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며, 적용시에는 재정운용의 성경적 원칙 또는 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절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단별 또는 개별교회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겠다.

이 규정은 성인기준 출석교인 규모가 150인 이상, 연간 현금수입규모 1.5억원 이상인 교회로서 회계 담당 사무원을 내부에 별도로 두는 경우 적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계담당 전임 사무원이 아니더라도 회계를 별도로 기록, 관리하는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회계담당 사무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A. 정관(또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사항

정관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규정이며, 정관에 재정운영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조직: 교회 운영조직은 다음과 같다.

교단마다 내부 운영조직의 명칭이 각각 다르나 최소한 다음의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기구 명칭과 역할, 구성원 자격 및 선임 방법, 임기, 회의 성원 및 결의 방법 등을 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공동의회(교인총회/사무총회 등): 세례(침례)교인 이상의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 기구이며 교회 의사결정 최고 기구이며, 교회별로 모든 교인이 참석하는 공동의회와 직분자 중심의 제직회를 구분할 수 있다.

- 담임목사 신임 및 위임
-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출
- 교회정관 및 세부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결정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교인의 권리

당회(사역자회의 등): 시무장로(또는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포함), 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질적인 업무집행 결정 기구

- 교회 정책사안 심의
- 교회 정관 및 시부 시행 규칙 개정안 심의
- 예산 및 결산 심의
- 교회 원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재정운영위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재정에 관한 계획 입

안 및 결산을 담당하는 기구

- 재정운영위원장/운영위원
- 감사
- 재정 담당 실무자

● (재정운용의 원칙) 재정관리하기 위한 제도에는 다음의 원칙들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 청지기적 사명: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에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투명성: 재정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교인들이 언제든지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는 공시절차를 두어 교인 누구든지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균형: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운영비의 지출 비율은 목회방향에 따라 균형있게 지출되어야 한다.
- 기능의 분리: 재정을 집행하는 기능, 이를 기록하는 기능 및 이를 사후 감독하는 기능은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 문서화: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월 1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회계연도는 결산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개별 교회의 상황에 맞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 등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회계처리 방식) 교회의 회계처리는 (재정규모가 소규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식부기는 수입/지출 발생시 재산의 증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또는 결과 성격인 상대계정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하며, 통상 차변 및 대변의 방식으로 전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복식부기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단식부기의 다음과 같은 한계성 때문이다.

- ✓ 재산의 증감 한쪽만 관리하므로 증감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 ✓ 자기오류 검증 기능이 없다
- ✓ 현금 및 (요구불)예금 이외의 재산 및 부채 관리를 하지 못한다.
- ✓ 현금과 예금을 통합관리 하므로 현금과 개별 계좌의 잔고 확인이 즉시 되지 않는다.

- ✓ 정상적인 수입/지출 항목이 아닌 항목이 수입/지출로 반영되어 수지결산서 규모를 왜곡시킨다.
- ✓ 당해 년도의 수입/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 보유 재산의 사용분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음으로 자산 교체의 시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 장기적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 ✓ 담당자의 자의적인 자금 운용 또는 자금 유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 (특별회계) 교회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운용하는 경우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하되 결산 시 구분회계 보고서와 통합회계 보고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는 이유는 특정한 목적으로 드린 현금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단,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를 구분하는 경우 각각 개별적인 결산서를 작성하되 교회 전체적으로 통합한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 (예산)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예산을 작성하는 것은 교회가 차년도 교회방향에 따라 진행하는 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설정된 중요성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정시켜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수입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경우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 (감사) 매년 교회의 업무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결산에 대한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결산 및 공시) 교회는 결산 감사종료 후 다음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예산
- 예산대비 수입/지출 결산서
- 대차대조표
- 재산 및 부채 목록
- 순자산 변동표
- 부속명세서
- 감사보고서

- (차입) 교회는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시적인 자금 공백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차입할 수는 있다.

한글개역성경에서는 '피차 아무도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빚 지지 말라'(롬 13:8)라고 하였으며, NIV에서는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의 표현으로 빚진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경고하는 규정이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일시적이어야 하며, 차입금 상환 계획(일시적 자금 운용 차이 또는 성도들의 작정현금 총액 등)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겠다.

- (세금)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교회가 정직한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혜택, 지방세 감면 혜택 등 세법상 특혜를 받고 있다. 교회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항과는 별도로 교회는 세법상 부여하는 다음의 협조의무를 부담하므로 정직한 납세문화와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금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며 성실하게 납세하도록 돋는 것은 국민 각자가 부담해야 할 복지후생적 사랑의 분담을 최소한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교회가 비용 지출시 현금으로 결제하면 상대방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세할 가능성이 크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대방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부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세액 납부의무
-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의무



- (제정에 관한 규칙) 재정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규칙에 의한다.

재정에 관한 규칙

1장 [총 칙]

- (목적) 이 규칙은 OO교회의 모든 활동에 따르는 예산의 편성 및 업무집행을 정확/신속하게 처리하며, 교회의 재정상태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집행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은 정관의 위임을 받아 재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실질적인 적용과정을 정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 (적용범위) 교회 재정에 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의 실시
 - 자금의 출납/보관, 조달 및 운용
 - 유형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 회계에 관한 전표 및 장부의 기록/보관
 - 결산서의 작성과 보고
 - 감사 및 보고

-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차대조표일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한다.
- 적립금은 교회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한 자금의 상대계정을 의미한다.
- 경상수지 잉여차액은 당기의 순 자산 증가액을 의미한다.
- 금액적으로 '중요하다'함은 건별 수입/지출액이 년간 현금 수입금액단계별로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50억원 초과: 0.5%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2%
 - 1억원 이하: 200만원

금액적 중요성은 재정운용의 의사결정 또는 감사 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교회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교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조에 의거 매년 **월 1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5. (재정담당자의 의무) 재정위원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힘쓰며, 재정상태에 대해서 정확/신속하게 기록/계산/보고하고, 이를 관리하고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한다.
6.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한) 교회는 재정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①. 회계연도별 결산서: 영구
 - ②. 회계장부 및 전표: 10년
 - ③. 자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 10년
 - ④. 보조장부 및 기타: 5년

부피가 커서 계속 보관하기에 부담이 되는 보조장부 등을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보관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증빙서류 및 기초회계장부와 전표는 10년 이상, 결산서는 교회의 역사를 의미하므로 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다.

2장 [예산관리]

7. (목적) 예산은 교회의 목회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특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재정운용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며,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8. (예산기간) 예산의 편성기간은 1년 기준으로 월 단위 예산 수립을 지향한다.

예산은 회계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계절 또는 월별로 시행하는 행사의 규모 차이로 월단위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월별 예산집행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월별로 변동이 거의 없거나 전체 예산 규모가 작은 경우(년 예산1억 이하)에는 년 단위 예산 설정도 가능하겠다.
9. (예산의 종류)
 - ①. 교회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계는 경상적인 현금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경상적인 비용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하고, 특별회계는 건축 등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하는 수입과 이에 대한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는 경우의 회계를 말한다.
 - ③.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목적, 기한을 분명히 한 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예산의 작성 및 승인)

- ①. 예산은 목회활동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한다.
- ②. 재정위원회는 차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지침을 회계년도 개시일전 2개월까지 예산 수립 담당자에게 제시한다.
- ③. 각 부문별 예산 수립담당자는 회계년도 개시일 5주전까지 해당 부문별 예산을 예산수립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 조정된 예산을 목표예산이라고 한다.

- ④.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 의회 3주전까지 당회는 예산을 심의한다.
- ⑤.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 2주전까지 예산을 공동의회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공시한다.
 - i 예산 수립을 위한 지침
 - ii 목회 계획서
 - iii 수입/지출 명세서
 - iv 인건비 명세서
 - v 추정 자산 및 부채 목록
- ⑥. 공동의회는 일반회계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을 승인하며 승인을 받은 예산을 실행예산이라고 칭한다.

11. (예산의 수정/경정) 실행예산 편성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계연도 종이지만 당초 승인 받은 실행예산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예산은 최초 예산을 승인한 기관인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별교회의 상황에 따라 예산 승인을 제직회에서 승인한 경우 수정/경정 예산의 승인 기관도 제직회가 된다. 즉, 예산을 승인한 기관과 수정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은 동일하여야 한다.

12. (예산의 집행) 예산을 집행하는 자는 예산의 목적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예산과 실적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달성을 노력하여야 한다.

13. (예산외 지출) 예산외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승인 권자가 예산외 지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예산의 전용) 동일한 최소 분류기준 내에서의 예산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삽감한 항목으로 전용하지 못한다.

15. (예산의 이월) 지출예산 중 그 성격상 당해 년도에 지출을 완료할 수 없음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수입/지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 (예비비) 예견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에 총당하기 위하여 예산 항목으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①. 예비비 설정액은 예비비를 포함하기 전 지출예산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삽감/감액된 항목에 시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반드시 재정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③.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예비비항목으로 지출/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항목의 지출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결산 시 예비비의 사용내역 명세서를 결산서에 첨부한다.

3장 [자금관리]

17. (자금의 종류) 이 규정에서의 자금이란 현금 및 예금을 말하며 현금은 2~3일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수표, 유가증권(주식, 채권), 우편환증서를 포함한다.

18. (수입과 지출)

- ①. 금전의 보관 및 출납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 ②. 금전의 출납은 담당자가 작성한 후 수입/지출 결의서에 의한다.
- ③. 금전의 지출은 금융기관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19. (지출증빙) 지출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이어야 하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결의서 및 집행담당자의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5만원 이상의 비용 지출시 다음의 증빙을 적격 증빙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원인 행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 ✓ 신용카드거래
- ✓ 현금영수증 거래

이와는 별도로 지하철 교통비 등 소액의 경비지출액으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 집행자가 일시/내용/목적/금액을 기록한 영수증으로 지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20. (예입) 주일에 수납된 금전은 재정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21. (현금내역통보)

- ①. 교회는 주보 또는 홈페이지에 현금자 명단을 공개하며, 현금액수는 개인별 금액이 아닌 종류별 합계액을 공개한다.
- ②. 재정담당자는 매주(또는 월단위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별로 현금 내역(일시, 항목, 금액)을 알릴 수 있다.
- ③. 교인이 본인의 현금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재정담당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재정위원회는 매년 익년 초에 해당년도의 현금내역(기부금영수증)을 교인 개인별로 작성하여 통보한다.

22. (시재) 출납담당자는 경상적인 소액현금 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연간 현금수입예산 총액의 0.3% 이내의 현금 시재를 보유할 수 있다.

교회의 예산 규모별로 구분하여 설정 할 수 도 있다.

- ✓ 예산50억원 초과: 0.1%
-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0.15%
-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0.2%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0.3%
- ✓ 1억원 이하: 0.5%

23. (장부와 시재 대조) 출납담당자는 매일 현금 출납 종료 후 현금시재잔액 및 통장잔액을 장부와 대조하여 차이 유무를 확인한다.

24. (은행거래)

- ①. 모든 예금은 교회명의로 한다.
- ②. 예금계좌는 특별회계 관리계좌, 수입계좌 및 경상비 지출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소액 경상비 지출계좌를 제외하고는 인감보관자와 통장보관자를 분리한다.

25. (적립금) 교회는 특별한 목적 또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퇴직급여 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3장 [회 계]

26. (일반원칙) 교회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①.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회계처리는 거래의 8요소를 구분하는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③. 모든 회계처리는 총액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계하여서는 안 된다.
- ④. 계정과목의 종류는 목적적합성을 가져야한다.
- ⑤. 계정과목은 중요성에 따라서 신설 또는 통합표시 한다.
- ⑥. 결산서의 양식 및 계정과목 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 ⑦. 회계 처리 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⑧. 회계처리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⑨. 수익사업회계는 한국 회계연구원이 제정하는 기업회계 기준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27. (회계전표)

- ①. 모든 재정에 관한 사건의 정리는 회계전표로 기록한다.
- ②. 회계전표의 종류는 단일전표 또는 3위식 전표(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형식 중 한 가지를 택한다.
- ③. 회계전표는 증빙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증빙을 해당전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증빙은 전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사건 발생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청구서 및 재정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영수증 등이 있다.

28. (장부 및 결산서) 회계 상 필요한 장부와 장부는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부로 한다.

29. (장부) 회계 상 필요하여 작성할 장부는 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부이다

- ①. 현금출납장: 현금의 입금 및 출금을 항목별로 일자 순으로 정리하여 기록하는 장부
- ②. 계정별 원장: 각 계정의 증감을 기록하는 장부
- ③. 보조장부: 각 계정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속성별로 작성하는 장부

30. (보조 장부) 회계전표와 장부의 관리효율성을 위하여 계정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조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예금 계좌별 원장
- ②. 유형자산 관리 대장
- ③. 개인별 현금명세

31. (장부 마감) 매 월말 및 회계 연도 말에는 장부를 각 계정별로 마감하여야 하며, 컴퓨터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마감한 장부를 매월 말 또는 회계 연도 말에 출력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는다.

32. (결산서) 이 규정에 의해 주기별로 작성할 결산서는 다음과 같다.

- ①. 매주: 주계표
- ②. 매월:
 - i 월계표
 - ii 시산표
 - iii 예산 대비 수입지출 보고서
- ③. 기말:
 - i 예산 대비 수입지출 보고서
 - ii 대차대조표
 - iii 순자산변동표
 - iv 재산 및 부채 목록
 - v 부속명세서

33. (월차 결산서의 공시) 회계담당자는 매월 단위로 재정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월차 결산서를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교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에 공시한다.

34. (계정별 원장 및 총계정 원장)

- ①. 회계전표를 분개장에 이기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매일 단위로 마감한다. 단, 회계처리를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분개장 작성절차와 총계정원장에의 이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각 계정의 일자별로 증가 및 감소를 기록하는 계정별 원장을 기록한다.

35. (계정과목)

- ①. 교회가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별도로 정하는 계정과 목표와 같다.
- ②. 계정과목의 신설 또는 개폐의 경우 재정위원장의 발의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36. (부채) 장래의 지출이 확정되었거나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한다.

37. (잉여차액의 처분) 이월경상수지 및 당기 경상수지 차액인 순자산증가액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본금전입 또는 특정목적 적립금으로 처분한다.

4장 [특별회계]

38. (관리규정) 특정사업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할 때에는 관리/운영규정을 재정위원회의 발의로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9. (특별기금의 전용)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단,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타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0. (특별회계결산)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록하되, 일반회계와 통합하여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5장 [재산관리]

41. (재산 명의자) 교회의 등기/등록되는 모든 재산은 교인의 총유재산으로 교회 명의로 한다. 단, 행정적 절차 미비로 당회장 (또는 재정위원장)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최대한 다기간 이내에 이를 교회 명의로 변경토록 한다.

교단의 원칙에 따라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등록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유지재단이 총괄로 소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42. (재산에 관한 결의) 교회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내용 변경 등 중요사항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43. (재산관리대장)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 ①. 중요 재산에 대하여서는 품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대장에 등재하고, 연 1회 이상 실사를 하여 차이 유무를 확인한다.
- ②. 당회장 또는 재정담당자가 경질될 때에는 즉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44. (불용처리) 유형자산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도는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하여서는 당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6장 [세 무]

45. (고유번호등록) 교회는 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이루기 위하여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

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다.

46.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교회는 교회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매월 (또는 반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징수한 원천세액을 납부 및 신고하여 소득자의 바른 납세문화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47.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교회는 매 분기(또는 반기)별로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48. (출연재산 보고) 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를 결산기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보고한다.

7장 [감 사]

49. (목적)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의 목적은 목회계획과 예산방침 및 승인 받은 실행예산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교회의 결산서가 정관 및 이 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함으로서 교회 결산정보 이용자에게 교회실체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50. (감사인의 적격성)
- ①. 감사인은 회계와 감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을 구비한 자이어야 하며, 재정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 ②. 감사인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2인 이하의 보조자를 둘 수 있다.
51. (감사의 종류) 감사는 회계기간 중의 업무감사 및 결산기 종료 후 결산에 대한 결산감사 두 가지 종류 모두 시행하여야 한다.
52. (감사 및 보고)
- ①. 감사인은 업무흐름에 대한 감사와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개정) 본 시행 규칙의 개정은 정관개정 규정을 준용한다.